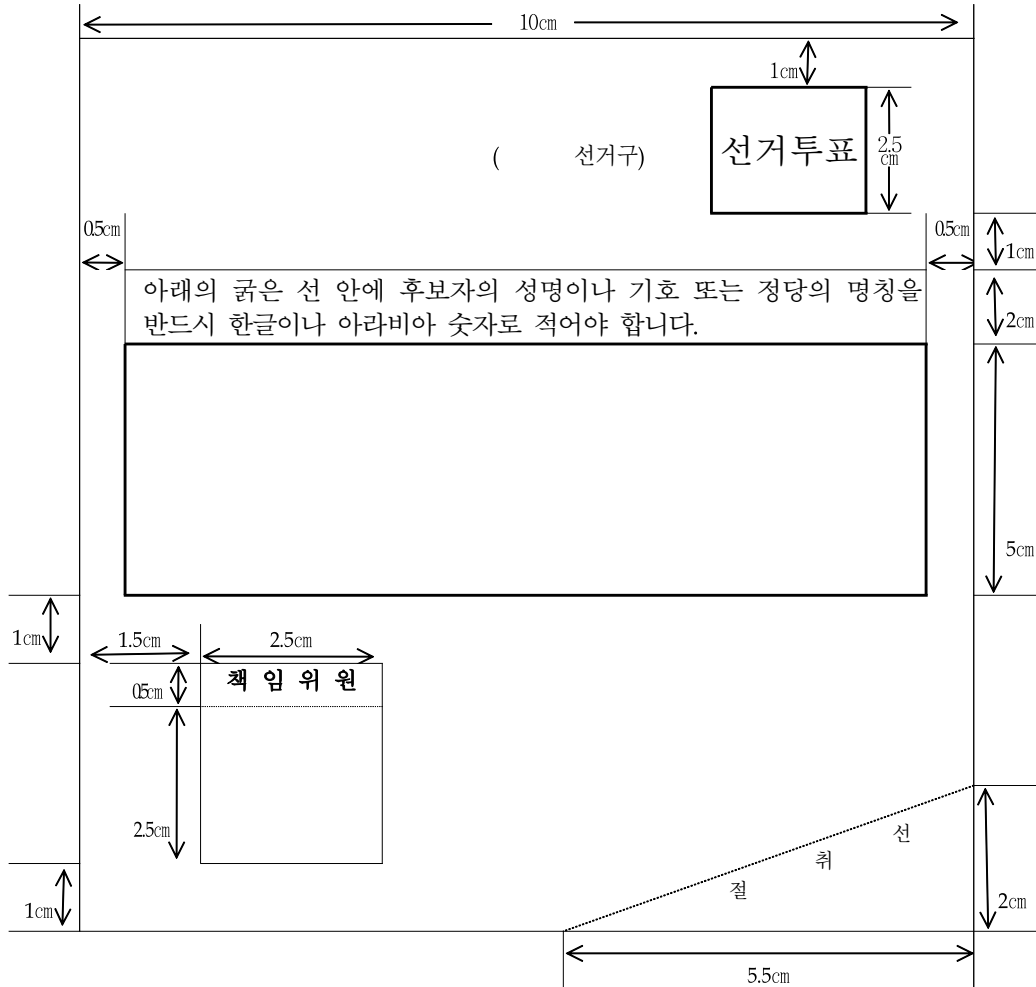


[별지 제59호의13서식] <개정 2020. 1. 17.>

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는 때의 투표용지



- 주: 1. 투표용지 인쇄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·숫자 및 문자는 인쇄하지 아니하며 기재칸은 다른 구분선보다 굵게 인쇄할 수 있다.
2. 청인과 재외투표소 책임위원(재외투표소관리자를 포함한다) 개인의 도장을 찍는 것은 그 인영의 인쇄로써 같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「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」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3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"(선거구)"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.
4. 일련번호는 재외투표소 단위로 작성한다.
5. 투표용지의 설명 내용은 선거에 따라 달리 표현하여 작성할 수 있다.